

직분자 치리 절차 마련 연구위원회

TASK FORCE TO DEVELOP CHURCH ORDER PROCEDURES TO DISCIPLINE OFFICEBEARERS

요약 보고서

이 보고서는 Hackensack 노회의 제안서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2022년과 2023년 총회에서 보류되었다가 2024년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보고서는 CRC 교단 내에서 치리 적용과 관련된 광범위한 혼란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특히 상위 의결기구가 주도하는 치리 절차의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과거 총회 결정과 역사적 관행이 상위 의결기구의 직분자나 카운실 면직 권한을 인정해 왔지만,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영역의 연구에 집중했다.

- 성경적 근거:** 치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구약에서는 장로, 제사장, 예언자, 왕 등 다양한 지도자들이 바른 길로 인도하고 교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신약은 신앙 안에서의 자기 통제와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하며, 성도 간의 영적 교제와 지역 교회 지도자의 적극적인 권면을 역설한다.
- 신학적 근거:**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이자 머리이시며, 직분자의 권위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다. 개혁교회의 운영방식에 따르면, 이 권위는 처음에는 카운실에 부여되며 이후 상위 의결기구(노회, 총회)에 위임된다. 위임된 권위는 “정도와 범위에서 더 크다”고 여겨지며, 상위 의결기구는 여러 교회의 집합적 권위를 대표하는 ‘결합된 카운실’로서 기능한다. 상위 의결기구의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확정적이며 구속력 있는(settled and binding)” 것으로 간주된다. 지역 교회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교단의 공동체적 연대를 표현하기 위해 일정한 권한을 상위 의결기구에 자발적으로 위임한다. 따라서 상위 의결기구는 교회의 영적 건강과 공동체의 선을 위해 하위 의결기구를 치리할 권한을 가진다.
- 역사적 배경:** CRC 교단 초기에는 노회가 카운실을 면직하는 일에 관한 논란이 비교적 적었다. 교회의 영적 건강과 “교회에 공동으로 관련된 일들”에 관해서 상위 의결기구가 개입한 전례가 존재하지만, 교회헌법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역사적으로는 지역 교회의 자율성과 노회와 총회의 권위 사이에 긴장이 존재해왔다.

- **교회헌법:** 교회헌법의 제4섹션(제78-84조), ‘교회의 훈계와 징계’에서는 치리의 목적을 회복, 교회의 거룩함 유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으로 명시한다. 교회헌법 해설서는 치리를 긍정적이고 필수적인 지도로 일관되게 설명하지만, 오늘날 소송 중심 사회에서는 그 적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 **타 교단과의 교회 정치 비교:** 본 보고서는 교회헌법, 의결기구 간의 관계(카운실, 노회, 총회 등), 권위, 책임성, 탈퇴 규정 등을 중심으로 다른 교단의 교회 정치 구조를 검토했다. 검토 대상은 캐나다개혁교회, 나사렛교회, 성공회, 복음주의언약교회, 미국장로교(PCUSA), 개혁프로테스탄트교회, 미국개혁교회(RCA), 연합감리교회, 남침례교회 등 아홉 개이다. 일부 교단은 지나치게 위계적이거나 개별 교회 중심적이어서 본 연구와는 관련성이 낮았다. CRC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다른 교단들 역시 권위, 책임성, 의결기구 간의 관계 문제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위원회는 상호 관계가 올바로 이해될 때, 상위 의결기구가 하위 의결기구 안에서 치리 절차를 시작하고 시행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스도의 권위는 각자 교회에 고유하게 주어지며, 각 교회의 카운실이 은혜의 방편과 천국의 열쇠를 맡고 있지만, 하위 의결기구는 단순한 자문적 권한 이상을 상위 의결기구에 위임한다. 상위 의결기구는 공통의 교리, 신앙고백, 교회헌법, 사역 등 “공통의 사안”에 대한 권위를 가지며, 개 교회의 영적인 건강이 위협받을 때 개입할 수 있다. 상위 의결기구에서 내린 결정은 “확정되어 지켜야 할 것”이므로, 노회나 카운실이 이를 따르기로 서약한 이상, 그 결정을 무시할 권리가 없다.

하위 의결기구는 상위 의결기구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항소할 권리를 가진다. 항소가 기각되면 하위 의결기구는 결정을 수용하거나, 질서 있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교단에서 절차를 따라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둘째 교회헌법의 원칙에 따라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카운실이 상위 의결기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탈퇴도 선택하지 않는다면 치리의 대상이 된다. 이는 “교회에 공동으로 관련된 일들”의 신앙적 일치를 위한 조치이다. 정해진 기간과 항소 절차 이후에도 카운실이 불순종 상태로 남을 경우, 노회나 총회는 해당 교회를 사실상 탈퇴한 것으로 선언할 수 있다. 만약 내부 분열로 인해 다수의

카운실이 언약을 깨뜨려 교회의 영적 건강을 해칠 경우, 노회나 총회는 개입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직분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교인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극단적 상황에서는, 노회가 전체 카운실을 면직하고 새로운 카운실을 세울 수 있다. 또한 노회가 불순종한 카운실을 징계하지 않을 경우, 총회는 대리 위원회를 통해 직접 치리를 시행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교회헌법의 최소한의 수정만을 추천하며, 모든 상황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 대신 지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상위 의결기구가 하위 의결기구를 감독하고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권한을 갖는다는 점, 즉 그동안 암묵적으로 인정되어 온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교회헌법 제27조 b항에 보충 조항을 추가해, 상위 의결기구가 하위 의결기구의 치리 절차를 지도하며 교단적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하위 의결기구를 사실상 탈퇴한 것으로 선언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또한 제83조를 개정하여, 지역 카운실의 요청이 없더라도 교회의 평안과 질서를 위한 예외적 상황에서는 상위 의결기구가 직분자를 정직·면직할 수 있음을 명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직분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2024년 총회에서 제정된 “한정적 정직” 조치는 특수한 상황을 위한 것이므로, 새로운 치리 유형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됨을 명확히 한다.

궁극적으로 이 보고서는 교회헌법을 법률적 도구로 삼는 것을 경계하며, 교회가 온전히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 안에서 신뢰와 존중, 사랑이 뿌리내려야 함을 강조한다.